

食品衛生法中改定法律 立法豫告(案)에 對한 産業界 意見

2004. 10. 26

한국식품공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제과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제당협회	한국급식관리협회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수출입협회
한국식품임가공협회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조미료공업협동조합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한국제빵제과공업협동조합	한국제염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청량음료공업협동조합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발생한 만두소 사건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전 국민의 불신이 극도로 고조되자 정부가 식품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공청회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산업계가 제기한 의견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당초 안대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식품업계의 발전을 크게 제약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컨대, 동 법안은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를 맡겨 정부의 책임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으며, 위반제품의 위해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자진회수하게 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을 최소 13년 이상으로 강화된 형량은 형법상의 과실치사죄 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큼니다. 특히,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행정처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할 여지마저 있으며, 관련 식품업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산업계는 식품관련 규제의 강화로 얻게 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선의의 피해자만을 양산, 식품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고 농업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지파동을 겪은 기업들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업계는 이미 도산하거나 썩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6월 언론 보도상 문제가 되었던 만두업체들도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상당 기업들은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계는 식품의 위생·안전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0. 26

한 국 식 품 공 업 협 회	회 장 박 승 복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	회 장 강 신 호
대 한 상 공 회 의 소	회 장 박 용 성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회 장 김 용 구
대 한 장 류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송 인 섭
대 한 제 과 협 회	회 장 김 영 모
대 한 제 당 협 회	회 장 김 주 형
한 국 급 식 관 리 협 회	회 장 박 훈 자
한 국 김 치 · 절 임 식 품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김 형 수
한 국 도 시 락 식 품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김 호 균
한 국 면 류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김 자 현
한 국 식 품 수 출 입 협 회	회 장 이 정 식
한 국 식 품 임 가 공 협 회	회 장 김 재 현
한 국 압 착 식 용 유 업 중 앙 회	회 장 염 호 열
한 국 어 육 연 제 품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박 세 준
한 국 연 식 품 공 업 협 동 조 합 연 합 회	전 무 이 사 이 장 휘
한 국 유 가 공 협 회	회 장 전 화 진
한 국 육 가 공 협 회	회 장 박 재 복
한 국 인 삼 제 품 협 회	회 장 최 기 선
한 국 조 미 료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이 연 수
한 국 전 분 당 협 회	회 장 한 종 태
한 국 죽 염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김 윤 세
한 국 제 빵 제 과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정 현 도
한 국 제 함 식 품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도 운 기
한 국 청 량 음 료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안 경 식
한 국 추 출 가 공 식 품 업 중 앙 회	회 장 전 병 남
한 국 통 조 립 식 품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유 현 종

직 인 생 략

의견요지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업무 수행시 관련 공무원과 함께 감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20조의 2)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지도 또는 감독하에 당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를 사실적으로 보조하는데 그치며 독자적인 직무활동은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되어야 할 것임.

2. 신설되는 식품시민감사인제도는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드문 규정이며 많은 부작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법제20조의 3)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충원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 경우 법적 신분의 불명확성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의 문제, 기업의 영업비밀 등 보안유지 문제 등이 나타나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신설조항이 삭제되어야 할 것임.

3. 인체에 위대한 식품에 대해서만 자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31조의 2)

○ 인체에 위대한 식품 등에 대한 회수조치는 당연한 것이나 해당식품의 위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하여도 강제적으로 이를 회수토록 하는 것은 식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인체에 위대한 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만 국민에게 알리고 회수할 수 있어야 함.

4. 부당한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의 환수액 산정 기준을 "매출액 대비"가 아닌 "당기 순이익 대비"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65조의 2)

○ 매출액은 부당 이익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상한선이 없는 10%라는 기준도 일률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부당이익금 환수 기준을 당기 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환수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함.

5.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에 1천만원이라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71조의 2)

○ 법에 명시된 포상금 상한선이 자칫 악덕 클레임 제기자가 업계에 요구하는 최소협상 단가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단순히 고액 포상금만을 노리는 "食파라치"의 기승을 불러일으켜 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음.

6.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71조의 3)

○ 행정처분의 종류를 불문하고 경미한 범위 반행위까지 공표토록 하는 것은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한해서만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야 함.

7. 고의적으로 유해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 한해서만 형량하한제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제74조의 2)

○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규정하는 것은 실제 행위자만 처벌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모르고 한 행위까지 형량 하한제의 징역형으로 다루는 것은 타법(형법상 강도죄, 상해죄, 중상해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형량임.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의 문제점 · 개선의견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 및 직무범위 명확화 (법제20조의2)

■ 현행

제20조의2(명예식품위생감시원)

-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고 직무를 식품접객업 지도·점검, 유통중인 식품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 식품

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확대함

■ 문제점

- 국가의 고유 업무인 감시 단속업무를 법적 신분이 불분명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내지 책임행정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하는 것은 부실감사나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어렵게 할 수 있음

■ 개선의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관련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의 지도 또는 감독 하에 당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를 사실적으로 보조하는데 그치며, 독자적인 직무활동은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보건복지부(안)	건의(안)
<p>제20조의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임명·해촉 등)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u>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접객업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유통중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생략) <p>② (생략)</p> <p>③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 추가 신설 ></p>	<p>제20조의2 ----- ----- ----- -----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공무원과 함께 감시할 수 있고 그 직무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좌 동 > 2. < 삭제 > <p>④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관련업체에 금전적·물질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p>

2. 식품시민감사인제도 도입관련 신설조항 삭제 (법제20조의3)

■ 현행

[신설조항]

■ 개정(안)

- 영업자는 영업소의 위생상태와 안전한 식품등의 제조 가공을 위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을 한 자를 당해 영업소에 식품시민감사인으로 둘 수 있고 이들 업소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문제점

- 위 조항은 국내외 어느 규정과 국가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는 규정으로 감사인을 위촉하였을 경우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이 면제될 수 있어 이를 이용하여 "자율감사"가 아닌 "부실감사"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
- 또한, 아울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 신분의 불명확성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의 문제, 영업비밀 등 보안유지의 문제 등도 야기할 수 있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충원으로 단속과 감시가 원활해진다면 본 조항은 실질적으로 중복 조항이며, 기업의 업무비밀 노출 등의 부작용도 예상됨

■ 개선의견

- 동 조항 삭제

3. 위해식품 범위 및 회수규정 현실화 (법제 31조의2)

■ 현행

제31조의2(식품등의 자진회수)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 가공 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안)

- 위해한 식품 등에 대하여 자진회수 대상을 세부적으로 법 위반제품(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 10조 제2항 또는 제11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법제31조의2)

■ 문제점

- 법 제3조 위생적취급, 제10조 표시기준 및 제7조4항의 수분함량 등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 없는 위반 사항에 까지 의무적으로 이를 회수토록 하는 규정은 영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여 영업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음
- 영업자의 자진회수(Recall)는 제조물책임관련 단체소송이 활발한 영미법계 국가에서,

소비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결함 있는 물품을 영업자가 미리 수거하여 향후 거액의 손해배상을 방지하려는 사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 따라서 자진회수는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입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 입법예고한 조항 위반시 위해발생의 개연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해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수토록 하는 규정은 영업자에게 막대한 사업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 개선의견

- 법 제13조에서 신설되는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자진회수토록 해야 함

보건복지부(안)	건의(안)
<p>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 회수)①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 가공 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는 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그 영업을 관할하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장과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한다.</p> <p>제②항 < 생략 ></p>	<p>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 회수)① ----- ----- ----- 위반한 내용이 법 제13조 규정의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한 위반행위인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 ----- -----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좌 동 ></p>

4. 부당이득금의 환수기준 완화 (법제65조의 2)

■ 현행

[신설조항]

■ 개정(안)

- 영업자가 법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한 식품 등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부당이득금의 환수 취지는,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영업자가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매출액은 영업자의 정확한 이익을 산출하는 기초가 될 수 없으며,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입법례도 없음

-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한 환수 기준도 일률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함

■ 개선의견

- 실질적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매출금액 보다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하여야 할 것이며, 100분의 10이라는 일률적인 기준도 일반적인 행정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과 마찬가지로 제재 금액 또는 산정률의 상한선을 규정해야 함

보건복지부(안)	건의(안)
<p>제65조의2(부당 이익금의 환수)</p> <p>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당해 식품 등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익금의 환수 금액은 <u>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u> 하며, 환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5조의2(부당 이익금의 환수)</p> <p>① < 좌 동 ></p> <p>② ----- ----- <u>당기순이익금으로</u> 하며, ----- ----- -----</p>

6. 정보공표 대상 식품범위 제한 [법제71 조의3]

■ 현행

[신설조항]

■ 개정(안)

-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게,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 처분관련 영업정보를 공표토록 의무화함

■ 문제점

- 공표의 사실적인 효과 내지 위력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의 종류를 불문하고 경미한 법 위반 사실까지 공표토록 하는 것은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법 제56조의2는 행정청이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한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표의 주체가 형식적으로 달라질 뿐 위해 발생은 곧 행정처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위 두 조항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중복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됨

-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의 취지를 감안할 때, 행정처분의 공표는 이번 "만두사건"에서 보았듯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합부로 시행되어서는 안됨

■ 개선의견

- 경미한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의 공표는 제외하고 영업정지 이상 경우에 한해서만 공표토록 해야 함

보건복지부(안)	건의(안)
<p>제71조의3 (정보공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영업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이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1조의3 (정보공표)----- -----<u>영업정지 이상의</u> <u>행정처분이 확정된</u>----- ----- ----- ----- ----- ----- -----</p>

7. 형량관련 규정 완화 (법제74조의2)

■ 현행

제74조(벌칙)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개정(안)

- 법 제74조(벌칙)제6조 규정에 위반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법 제4조(위해식품 판매), 제5조(병육등의 판매), 제8조(유독기구 판매·사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인체에 위해가 있음을 알고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제74조의2)

■ 문제점

- 양형의 관점에서 1년 또는 3년 이상을 단기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
 -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식품위생법은 이미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익금의 환수 등 실질적인 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각종 제재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과중한 징역형은 헌법상

○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인체에 위해가 있음을 알고' 이를 행한 경우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또는 제8조 등의 경우는 그 법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고의가 추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위 조항은 실질적으로 모든 법 위반자를 (대개는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많음

○ 단기3년 이상의 징역형은 형법상 강도죄(제333조)에나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가하는 손해의 형태가 유사한 상해죄(7년 이하) 또는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량에 비해서도 대단히 높은 규정임

■ 개선방안

○ 실질적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까지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다루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인체에 위해가 있음을 알고 위반 행위를 한 고의적인 행위자만 등 법령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므로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함

보건복지부(안)	건의(안)
<p>제74조의2 (벌칙) ①제4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의 위반한 자로서 인체에 위해가 있음을 알고 이를 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74조의2 (벌칙) ①제4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인체에 위해가 있음을 알고 이를 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 삭제 ></p>

의견에 대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식품규범(codex)과 비교

한국	일본	미국	EU	CODEX
<p>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법 제20조의2)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등 자격기준 모호</p>	<p>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정부등록 교육이수자, 전문의, 식품전공자 등 엄격한 자격기준 적용</p>	<p>미시행</p>	<p>미시행</p>	<p>미시행</p>
<p>2. 식품시민감사인제도(식품위생법 제20조의3) -소비자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p>	<p>미시행</p>	<p>미시행</p>	<p>미시행</p>	<p>미시행</p>

한국	일본	미국	EU	CODEX
<p>3. 식품등의자진회수 (식품위생법 제31조의2) -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기준·규격, 표시위반 등에 대하여도 회수의무 부여함.</p>	<p>민법(하자담보책임), PL(제조물책임)법 -회수를 의무화하지 않고 사업자는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과 “PL법” 상 책임이 있음.</p>	<p>Recall제도 〈21 CFR 7〉 -Recall:법적사항위반 강제 회수 -Market withdrawal : 법적위반사항이 아니라 자진회수 -Stock Recovery : 판매 및 유통전 결함발견 자진회수</p>	<p>Recall 제도 〈Regulation(EC) N°178/2002, Article 50〉 -Recall:기업자발적 결정</p>	<p>미시행</p>
<p>4. 부당이익금의 환수(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매출액의 10%로 규정</p>	<p>미시행</p>	<p>미시행</p>	<p>미시행</p>	<p>미시행</p>
<p>5. 포상금 지급(식품위생법 제71조의2)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범 위 반행위 신고자에 게 포상금 지급</p>	<p>미시행</p>	<p>미시행</p>	<p>미시행</p>	<p>미시행</p>
<p>6. 정보공표(식품위생법 제71조의3)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정보공표 의무화</p>	<p>정보공표 〈식품위생법 제63조〉 -행정처분 위반사항 등 정보공표</p>	<p>FDA Enforcement Report 〈21 CFR 7.50〉 -대부분 회수관련 정보</p>	<p>Alert Notific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위해발견시 정보 공표</p>	<p>미시행</p>
<p>7. 벌칙(식품위생법 제74조의2) -형량하한제 실시(1년, 3년 이상 징역벌칙 규정 신설)</p>	<p>벌 칙 〈식품위생법 제71,72,73,74,75, 76,77조〉 -최하벌금형부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p>	<p>Penalty 제도 〈FFDCA SEC.303〉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둘다 적용</p>	<p>Penalty 제도 〈EU 국가별 벌칙 시행〉 -EU 회원 국가별로 실시</p>	<p>미시행</p>